|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2)**  (2008년 5월 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447차 회의에서 통과; 2014년 2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07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한 규정을 수정할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재판 실천에 결부시켜 인민법원이 회사 해산, 청산 안건 심리 시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단독으로 또는 합계로 회사 전체주주 표결권의 10% 이상을 소지한 주주가 하기 각호 상황 중 1을 이유로 회사해산소송을 제출하였고 회사법 제182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여야 한다.  (1) 회사가 2년 이상 주주회의나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못하였고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경우  (2) 주주 표결 시에 표결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정관이 규정한 비율에 달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연속 효과적인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 의결을 하지 못하였으며 회사경영에 심각한 곤란이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이사가 장기간 충돌상태에 있고 주주회의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경우  (4) 경영상 기타 엄중한 곤란이 발생하여 회사가 지속적으로 존속하는 경우 주주의 이익이 중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  주주가 알 권리, 분배청구권리의 손상 또는 회사의 채무총액이 재산총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 그리고 기업법인의 영업허가증이 취소되었는데도 청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해산소송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2조** 주주가 회사해산소송과 동시에 회사청산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회사 청산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인민법원이 회사해산을 판결한 후 회사법 제183조 규정과 이 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자체로 청산하거나 인민법원에 회사청산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주주가 인민법원에 회사해산소송과 동시에 재산보전이나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주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보전을 집행할 수 있다.  **제4조** 주주의 회사해산소송은 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원고가 기타주주까지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기타주주는 제삼자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원고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타주주에 대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여야 한다.  회사해산소송을 제출하는 경우 원고가 기타주주에게 고지하거나 인민법원이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송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기타주주나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또는 제삼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허용하여야 한다.  **제5조** 회사해산 소송안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조정에 치중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협상하여 회사 또는 주주가 지분을 인수하거나 자본감소 등 방법으로 회사존속에 동의하고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한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협상을 통하여 회사존속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즉시 판결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조정을 거쳐 회사가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조정서 발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분을 양도하거나 말소하여야 한다. 지분을 양도하거나 말소하기 전에 원고가 회사의 지분인수를 이유로 회사 채권자에 대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회사해산소송에 대한 인민법원의 판결은 회사주주일동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인민법원이 회사해산소송 청구의 기각을 판결한 후 당해 소송을 제출한 주주나 기타주주가 동일 사실과 이유로 재차 회사해산소송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조** 회사는 회사법 제183조 규정에 따라 해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청산팀을 구성하고 자체로 청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하기 각호 중 1에 해당한 상항으로 하여 채권자가 인민법원이 청산팀을 지정하여 청산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여야 한다.  (1) 회사를 해산한 다음 기간을 경과하도록 청산팀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청산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상황  (2) 청산팀을 구성하였으나 고의로 청산을 지연시키는 상황  (3) 불법청산으로 하여 채권자나 주주의 이익에 엄중한 손실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  본 조 제2항 상황에 채권자들이 청산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회사 주주가 인민법원에서 청산팀을 지정하여 회사에 대하여 청산을 진행할 것을 신청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수리하여야 한다.  **제8조** 회사청산안건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즉시 관련인원을 지정하여 청산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청산팀 구성원은 하기 각호에 해당한 인원이나 기구로 구성할 수 있다.  (1)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  (2) 합법적으로 설립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  (3) 합법적으로 설립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 중의 관련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직업자격을 취득한 임직원.  **제9조** 인민법원이 지정한 청산팀 구성원이 하기 각호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 주주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청산팀 구성원을 경질한다.  (1) 법률이나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2) 직업 수행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3) 회사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엄중하게 해친 행위가 있는 경우.  **제10조** 회사가 법에 따른 청산을 완료하고 말소등록수속을 하기 전까지 회사와 관련한 민사소송은 회사의 명의로 진행하여야 한다.  회사가 청산팀을 구성한 경우에는 청산팀 책임자가 회사대표자로 소송에 참가하고 청산팀을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 법정대표자가 회사대표자로 소송에 참가한다.  **제11조** 회사청산 시에 청산팀은 회사법 제185조 규정에 따라 이미 파악한 전체 채권자에게 회사의 해산, 청산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의 규모와 영업지역범위에 근거하여 전국 또는 등록지 성급의 영향력이 있는 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청산팀이 전항 규정에 따라 통지의무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계로 채권자가 적시에 채권을 신고하지 못하고 변제를 받지 못하여 청산팀 구성원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사청산 시에 채권자가 청산팀이 확정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산팀의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청산팀이 재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재확인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고 채권자가 회사를 피고로 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하여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정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회사 청산절차 종지 전에 보완 신고하는 경우 청산팀은 등록을 허용하여야 한다.  회사 청산절차 종지라 함은 청산보고서에 대한 주주회의,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의 확인을 필한 것을 말한다.  **제14조** 채권자가 보완 신고한 채권은 법에 따라 회사의 미 분배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다. 회사 미 분배재산으로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잉여재산분배에서 주주가 취득한 재산으로 변제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가 중대한 과실로 규정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못산 경우는 예외로 한다.  채권자나 청산팀이 회사 미 분배재산과 잉여재산 분배에서 이미 취득한 주주의 재산으로 보완 신고한 채권전액을 변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파산청산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회사가 자체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방안을 주주회의나 주주총회 의결에 회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주최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는 물론 청산방안을 인민법원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팀이 확인을 받지 아니한 청산방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확인을 받지 아니한 청산방안을 집행하여 회사나 채권자의 손실을 조성하였고 회사, 주주 또는 채권자가 청산팀 구성원의 배상책임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인민법원이 주최하여 청산하는 경우 청산팀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청산을 필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6개월 내에 청산을 필하지 못하는 경우 청산팀이 인민법원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인민법원이 지정한 청산팀이 회사의 재산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과정에 회사의 부채가 재산전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채권자와 협상하여 관련채무 변제방안을 작성할 수 있다.  채무변제방안을 채권자전원이 확인하였고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한 인민법원은 청산팀의 신청에 따라 인가를 재정할 수 있다. 청산팀은 당해 변제방안에 의거하여 채무를 변제한 후 인민법원에 청산절차 종지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채무변제방안이 채권자의 확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청산팀은 인민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이사와 지주주주가 법정기간 내에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하여 회사재산의 가치절하, 유실, 훼손을 조성하였거나 멸실하였으며 채권자가 손실을 조성한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에 대한 그의 배상책임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이사와 지주주주의 의무이행 태만으로 회사의 주요한 재산, 장부, 중요서류 등이 멸실하여 청산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채권자가 그의 연대적 변제책임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상술한 상황이 실제지배자의 원인으로 조성되었고 채권자가 회사 채무에 대한 그의 민사책임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이사와 지주주주 및 회사의 실제지배자가 회사해산 후 악의로 회사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손실을 조성하였거나 적법청산을 하지 아니하고 날조한 청산보고서로 회사등록기관의 등록말소수속을 편취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회사 채무에 대한 그의 상응한 배상책임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제20조** 회사는 적법청산을 필한 후에 해산하고 등록말소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가 청산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하여 회사가 청산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가 회사 채무변제에 대한 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이사와 지주주주, 실제지배인의 변제책임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적법청산을 하지 아니하고 말소등록을 하였고 주주나 제삼자가 회사등록기관에서 말소등록수속을 하면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부담을 약속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회사 채무에 대한 그의 민사책임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이사와 지주주주 및 회사의 실제지배자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이나 수명이 이 규정 제18조와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 후 과실의 대소에 따른 기타 인원의 책임분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제22조** 회사해산 시점까지 주주가 불입하지 아니한 출자액은 모두 청산재산으로 한다. 주주가 불입하지 아니한 출자액에는 불입하지 아니한 만기 출자액 및 회사법 제26조와 제80조 규정에 따라 분할 불입하는 출자액으로서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출자액을 포함한다.  회사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고 채권자가 출자액을 불입하지 아니한 주주 및 회사설립 시의 기타 주주나 발기인이 불입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청산팀 구성원이 청산사무 집행 중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을 위반하였거나 채권자의 손실을 조성하였고 회사나 채권자가 그의 변제책임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연속 180일 이상 단독으로 또는 합계로 회사지분의 1% 이상을 소지한 주식유한회사의 주주가 회사법 제15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청산팀 구성원이 전항이 서술한 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여야 한다.  회사청산을 필하고 말소한 다음 상기 주주가 회사법 제151조 제3항 규정을 참조하여 청산팀 구성원을 피고로 하고 기타 주주를 제삼자로 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회사해산소송안건과 회사청산안건은 회사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회사주소지라 함은 회사의 주요사무기구 소재지를 말한다. 회사의 사무기구소재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말단인민법원은 현(縣), 현급 시 또는 구 회사등록기관이 심사확인하고 등록한 회사의 해산소송안건과 회사청산안건을 관할한다. 중급인민법원은 지구(地區), 지구 급 시 이상 회사등록기관이 심사학인하고 등록한 회사의 해산소송안건과 회사청산안건을 관할한다. |  |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  **规定（二）**  (2008年5月5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47次会议通过；根据2014年2月17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07次会议《关于修改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的决定》修正)  为正确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结合审判实践，就人民法院审理公司解散和清算案件适用法律问题作出如下规定。  **第一条** 单独或者合计持有公司全部股东表决权百分之十以上的股东，以下列事由之一提起解散公司诉讼，并符合公司法第一百八十二条规定的，人民法院应予受理：  （一）公司持续两年以上无法召开股东会或者股东大会，公司经营管理发生严重困难的；  （二）股东表决时无法达到法定或者公司章程规定的比例，持续两年以上不能做出有效的股东会或者股东大会决议，公司经营管理发生严重困难的；  （三）公司董事长期冲突，且无法通过股东会或者股东大会解决，公司经营管理发生严重困难的；  （四）经营管理发生其他严重困难，公司继续存续会使股东利益受到重大损失的情形。  股东以知情权、利润分配请求权等权益受到损害，或者公司亏损、财产不足以偿还全部债务，以及公司被吊销企业法人营业执照未进行清算等为由，提起解散公司诉讼的，人民法院不予受理。  **第二条** 股东提起解散公司诉讼，同时又申请人民法院对公司进行清算的，人民法院对其提出的清算申请不予受理。人民法院可以告知原告，在人民法院判决解散公司后，依据公司法第一百八十三条和本规定第七条的规定，自行组织清算或者另行申请人民法院对公司进行清算。  **第三条** 股东提起解散公司诉讼时，向人民法院申请财产保全或者证据保全的，在股东提供担保且不影响公司正常经营的情形下，人民法院可予以保全。  **第四条** 股东提起解散公司诉讼应当以公司为被告。  原告以其他股东为被告一并提起诉讼的，人民法院应当告知原告将其他股东变更为第三人；原告坚持不予变更的，人民法院应当驳回原告对其他股东的起诉。  原告提起解散公司诉讼应当告知其他股东，或者由人民法院通知其参加诉讼。其他股东或者有关利害关系人申请以共同原告或者第三人身份参加诉讼的，人民法院应予准许。  **第五条** 人民法院审理解散公司诉讼案件，应当注重调解。当事人协商同意由公司或者股东收购股份，或者以减资等方式使公司存续，且不违反法律、行政法规强制性规定的，人民法院应予支持。当事人不能协商一致使公司存续的，人民法院应当及时判决。  经人民法院调解公司收购原告股份的，公司应当自调解书生效之日起六个月内将股份转让或者注销。股份转让或者注销之前，原告不得以公司收购其股份为由对抗公司债权人。  **第六条** 人民法院关于解散公司诉讼作出的判决，对公司全体股东具有法律约束力。  人民法院判决驳回解散公司诉讼请求后，提起该诉讼的股东或者其他股东又以同一事实和理由提起解散公司诉讼的，人民法院不予受理。  **第七条** 公司应当依照公司法第一百八十三条的规定，在解散事由出现之日起十五日内成立清算组，开始自行清算。  有下列情形之一，债权人申请人民法院指定清算组进行清算的，人民法院应予受理：  （一）公司解散逾期不成立清算组进行清算的；  （二）虽然成立清算组但故意拖延清算的；  （三）违法清算可能严重损害债权人或者股东利益的。  具有本条第二款所列情形，而债权人未提起清算申请，公司股东申请人民法院指定清算组对公司进行清算的，人民法院应予受理。  **第八条** 人民法院受理公司清算案件，应当及时指定有关人员组成清算组。  清算组成员可以从下列人员或者机构中产生：  （一）公司股东、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  （二）依法设立的律师事务所、会计师事务所、破产清算事务所等社会中介机构；  （三）依法设立的律师事务所、会计师事务所、破产清算事务所等社会中介机构中具备相关专业知识并取得执业资格的人员。  **第九条** 人民法院指定的清算组成员有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可以根据债权人、股东的申请，或者依职权更换清算组成员：  （一）有违反法律或者行政法规的行为；  （二）丧失执业能力或者民事行为能力；  （三）有严重损害公司或者债权人利益的行为。  **第十条** 公司依法清算结束并办理注销登记前，有关公司的民事诉讼，应当以公司的名义进行。  公司成立清算组的，由清算组负责人代表公司参加诉讼；尚未成立清算组的，由原法定代表人代表公司参加诉讼。  **第十一条** 公司清算时，清算组应当按照公司法第一百八十五条的规定，将公司解散清算事宜书面通知全体已知债权人，并根据公司规模和营业地域范围在全国或者公司注册登记地省级有影响的报纸上进行公告。  清算组未按照前款规定履行通知和公告义务，导致债权人未及时申报债权而未获清偿，债权人主张清算组成员对因此造成的损失承担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第十二条** 公司清算时，债权人对清算组核定的债权有异议的，可以要求清算组重新核定。清算组不予重新核定，或者债权人对重新核定的债权仍有异议，债权人以公司为被告向人民法院提起诉讼请求确认的，人民法院应予受理。  **第十三条** 债权人在规定的期限内未申报债权，在公司清算程序终结前补充申报的，清算组应予登记。  公司清算程序终结，是指清算报告经股东会、股东大会或者人民法院确认完毕。  **第十四条** 债权人补充申报的债权，可以在公司尚未分配财产中依法清偿。公司尚未分配财产不能全额清偿，债权人主张股东以其在剩余财产分配中已经取得的财产予以清偿的，人民法院应予支持；但债权人因重大过错未在规定期限内申报债权的除外。  债权人或者清算组，以公司尚未分配财产和股东在剩余财产分配中已经取得的财产，不能全额清偿补充申报的债权为由，向人民法院提出破产清算申请的，人民法院不予受理。  **第十五条** 公司自行清算的，清算方案应当报股东会或者股东大会决议确认；人民法院组织清算的，清算方案应当报人民法院确认。未经确认的清算方案，清算组不得执行。  执行未经确认的清算方案给公司或者债权人造成损失，公司、股东或者债权人主张清算组成员承担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第十六条** 人民法院组织清算的，清算组应当自成立之日起六个月内清算完毕。  因特殊情况无法在六个月内完成清算的，清算组应当向人民法院申请延长。  **第十七条** 人民法院指定的清算组在清理公司财产、编制资产负债表和财产清单时，发现公司财产不足清偿债务的，可以与债权人协商制作有关债务清偿方案。  债务清偿方案经全体债权人确认且不损害其他利害关系人利益的，人民法院可依清算组的申请裁定予以认可。清算组依据该清偿方案清偿债务后，应当向人民法院申请裁定终结清算程序。  债权人对债务清偿方案不予确认或者人民法院不予认可的，清算组应当依法向人民法院申请宣告破产。  **第十八条** 有限责任公司的股东、股份有限公司的董事和控股股东未在法定期限内成立清算组开始清算，导致公司财产贬值、流失、毁损或者灭失，债权人主张其在造成损失范围内对公司债务承担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有限责任公司的股东、股份有限公司的董事和控股股东因怠于履行义务，导致公司主要财产、账册、重要文件等灭失，无法进行清算，债权人主张其对公司债务承担连带清偿责任的，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上述情形系实际控制人原因造成，债权人主张实际控制人对公司债务承担相应民事责任的，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第十九条** 有限责任公司的股东、股份有限公司的董事和控股股东，以及公司的实际控制人在公司解散后，恶意处置公司财产给债权人造成损失，或者未经依法清算，以虚假的清算报告骗取公司登记机关办理法人注销登记，债权人主张其对公司债务承担相应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第二十条** 公司解散应当在依法清算完毕后，申请办理注销登记。公司未经清算即办理注销登记，导致公司无法进行清算，债权人主张有限责任公司的股东、股份有限公司的董事和控股股东，以及公司的实际控制人对公司债务承担清偿责任的，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公司未经依法清算即办理注销登记，股东或者第三人在公司登记机关办理注销登记时承诺对公司债务承担责任，债权人主张其对公司债务承担相应民事责任的，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第二十一条** 有限责任公司的股东、股份有限公司的董事和控股股东，以及公司的实际控制人为二人以上的，其中一人或者数人按照本规定第十八条和第二十条第一款的规定承担民事责任后，主张其他人员按照过错大小分担责任的，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第二十二条** 公司解散时，股东尚未缴纳的出资均应作为清算财产。股东尚未缴纳的出资，包括到期应缴未缴的出资，以及依照公司法第二十六条和第八十条的规定分期缴纳尚未届满缴纳期限的出资。  公司财产不足以清偿债务时，债权人主张未缴出资股东，以及公司设立时的其他股东或者发起人在未缴出资范围内对公司债务承担连带清偿责任的，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第二十三条** 清算组成员从事清算事务时，违反法律、行政法规或者公司章程给公司或者债权人造成损失，公司或者债权人主张其承担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有限责任公司的股东、股份有限公司连续一百八十日以上单独或者合计持有公司百分之一以上股份的股东，依据公司法第一百五十一条第三款的规定，以清算组成员有前款所述行为为由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人民法院应予受理。  公司已经清算完毕注销，上述股东参照公司法第一百五十一条第三款的规定，直接以清算组成员为被告、其他股东为第三人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人民法院应予受理。  **第二十四条** 解散公司诉讼案件和公司清算案件由公司住所地人民法院管辖。公司住所地是指公司主要办事机构所在地。公司办事机构所在地不明确的，由其注册地人民法院管辖。  基层人民法院管辖县、县级市或者区的公司登记机关核准登记公司的解散诉讼案件和公司清算案件；中级人民法院管辖地区、地级市以上的公司登记机关核准登记公司的解散诉讼案件和公司清算案件。 |